

제 1473 호  
1990. 2. 15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 부 관 유 천 수  
 전 화: 731-6111~3  
 인 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578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3

제2579호 서울특별시팀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4

제2580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 5

제2581호 서울특별시팀운동장설치조례폐지..... 6

제2582호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제2583호 서울특별시팀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 7

제2584호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8

제2585호 서울특별시소방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9

(이면계속)

일																				
일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2586호	서울특별시합공대설치조례개정조례	9
● 규 칙		
제232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	9
제2325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폐지	11
제2326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무분장규칙폐지	11
제2327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사무분장규칙	11
제2328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2
제2329호	서울특별시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5
● 고 시		
제 46 호	가축검진사업실시	19
● 공 고		
제 82 호	식기관제공무원직인폐기공고	20
● 구 고 시		
제 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20
제 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21
제 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21
제 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인가	21
● 구 공 고		
제 7 호	도시계획안공고	22
제 1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2
제 1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3
제 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4
제 17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24
제 18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허가	25
제 2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5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15

서울특별시 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78호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일반회계 8급정원 "47"을 "49"로하고 정원내용중 "보 건직2"를 신설하며, 7급정원 "527"을 "528"로하고, 정원내용중 전산직 "7"을 "8"로 한다. 별정직정원 "69"를 "68"로하고 정원내용중 6급상당 인력진단요원 "2"를 "1"로하며, 기능직 정원 "444"를 "441"로 하고 정원내용 10등급중 전기원 "22"를 "20"으로, 기계원 "23"을 "22"로 (기계 "18"을 "17"로) 하며 합계정원 "1,788"을 "1,787"로 한다.  
(별표2) 구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일반회계 6급정원 "1,529"를 "1,528"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149"를 "1,148"로 하며, 7급정원 "1,893"을 "1,891"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241"을 "1,240"으로, 도목직 "44"를 "43"으로 한다.

8급정원 "2,804"를 "2,844"로하고 정원내용중 보건직 "59"를 "99"로하며 9급정원 "1,933"을 "1,932"로하고 정원내용중 전기직

"40"을 "39"로 한다.

기능직정원 "3,430"을 "3,821"로하고 정원내용중 7등급중 기계장 "19"를 "8"로, 10등급중 전기원 "354"를 "356"으로, 기계원 "211"을 "212"로 (기계 "182"를 "183"으로), 사무보조원 "998"을 "1,329"로 (조무 "533"을 "864"로), 방호원 "548"을 "544"로하고 "토 목원 22"를 신설하며, 합계정원 "16,992"을 "17,367"로 한다.

**부 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15

서울특별시 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7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국제경기의 효과적 대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사업소에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①시민체육진흥에 관한 연구발전
  - ②시설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조경
- (별표1)

제3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

<p>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조(공무원의 정원) 사업소에 주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p> <p>제5조(하부조직) ①사업소에 운영과 및 영선과를 두고, 그 소속하여 동대문운영관 및 목동운영관을 둔다.</p> <p>②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영선과장은 지방기계과, 지광전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로 보하고, 동대문운영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목동운영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③운영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서,보안,관인관수,인사및업무조정 총괄</li> <li>2.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li> <li>3. 자재수급관리</li> <li>4. 운동장의 운영관리</li> <li>5. 동대문, 목동운동장의 지도감독</li> <li>6. 사업소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p>④영선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동장건축물, 토목구조물 및 시설설비</li> <li>2. 운동장의 기계, 전기, 방난방등 각종시설 설비</li> <li>3. 운동장의 조정시설 및 유지보수</li> <li>4. 경기용 기구 및 용구의 제작</li> <li>5. 동대문, 목동운동장의 영선관련업무 지도감독</li> </ol> <p>(별표1)</p>	<p>⑤동대문운영관은 동대문운동장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서, 보안, 회계 및 물품관리</li> <li>2. 운동장 운영관리</li> <li>3. 운동장 건축물 및 각종 설비시설계획의 수립 및 집행</li> <li>4. 잔디, 수목, 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li> <li>5. 운동장시설의 유지보수</li> <li>6. 경기용 기구관리</li> </ol> <p>⑥목동운영관은 목동운동장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서, 보안, 회계 및 물품관리</li> <li>2. 운동장 운영관리</li> <li>3. 잔디, 수목, 초화류의 식재 및 유지관리</li> <li>4. 운동장 건축물 및 각종설비 시설계획의 수립 및 집행</li> <li>5. 운동장 시설의 유지보수</li> <li>6. 경기용 기구관리</li> </ol> <p>제6조(직무대행)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대문운영관, 운영과장, 목동운영관, 영선과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부칭과 위치) 운동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리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운동장의 명칭과 관리</p>		
구분	명칭	위치
<p>잠실종합운동장</p>	올림픽주경기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잠실수영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잠실체육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잠실야구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구분	명칭	위치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운동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가 1번지
	효창운동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산1
목동 운동장	장충체육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0번지 102호
	목동주경기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4번지
	목동야구장 목동실내빙상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4번지

(별표2)

지 방 공 무 원 장 원 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역
3 급	1	행정 또는 별정직1
4 급	1	행정직1
5 급	3	행정직2, 전기·기계 또는 건축직1
6 급	15	행정직8, 건축직1, 전기직1, 기계직1, 임업직1, 전산직1, 전기·기계 또는 건축직2
7 급	31	행정직13, 전기직3, 통신직3, 기계직3, 건축직2, 임업직1, 간호직1, 전산직5
8 급	28	행정직14, 전기직2, 통신직1, 임업직2, 간호직3, 전산직4, 기계직1, 토목직1
9 급	4	행정직4
별정직	6	6급상당 : (VTR편집요원1) 1 7급상당 : (위험물취급주임기사1, 영확조정기사1, 체육지도자1) 3 8급상당 : (동해추정기사1, 체육지도자1) 2
기능직	331	6 등 급 : (전기장3, 기계장3, 통신장1) 7 7 등 급 : (전기장6, 기계장4, 통신장3) 13 8 등 급 : (전기원2, 통신원4) 6 10 등 급 : (토목원1, 건축원5, 교환원10, 통신원21, 전기원29, 기계원26(기계25, 영사1), 농업원7(원예7), 사무보조원 134(타자4, 집배3, 조무127), 방호원67(방호36, 경비31), 운전원5) 305
합 계	42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중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2590호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15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90호

서울특별시중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제2590호

서울특별시중합운동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운  
동장설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15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81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폐지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난지  
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㉕

◎서울특별시조례제2582호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설  
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종말처리시설"을 "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분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무) 사업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쓰레기의 위생적 종말처리
- 2. 쓰레기의 위생처리 방법의 연구발전
- 3. 쓰레기의 위생적처리로 생성되는 부산물  
의 처리와 이용방법에 관한 연구

제3조제1항중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  
기과"를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무조직) ①사업소에 사무계, 작업  
관리계, 시설계, 장비계 및 공장관리계를  
두고, 사무계장 및 작업관리계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장비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공장관리계  
장은 지방전기기사 또는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사업소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계

가. 문서, 보안, 판인판수 및 정사관리

나. 인사, 복무, 급여 및 후생

다.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라. 기타 다른계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2. 작업관리계

가. 쓰레기 반입검수

나. 처분장 악취 및 방역

다. 처분장 진입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

라. 불법행위 단속

마. 일반 산업폐기물(오니포함)업무처리

바. 청원경찰 관리

사. 방역장비 및 유지 관리

3. 시설계

가. 처분장 매립 계획

나. 시설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다. 임시사토장 및 시유지 관리

4. 장비계

가. 장비 유지 관리

나. 중장비 유류 업무

다. 세척, 세차시설 유지관리

라. 증기 조종원 및 정비원 관리

5. 공장관리계

가. 공장 및 공장 부속장비 관리

나. 공장시설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 관리

다. 사업소내 모든 전기시설 유지 관리

(별표) 지방공무원정원표5급편을 삭제하고 4급편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직	급	정원	정원내용
	4급	1	행정직1

6급정원 "3"을 "5"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1"을 "2"로 "전기직1"을 삭제하고, "기계 또는 전기직1" 및 "토목직1"을 신설한다.

7급정원 내용중 행정직 "2"을 "3"으로하고, "전기직1" 및 "화공직1"을 삭제하며, "토목직1"을 신설한다.

8급정원 "6"을 "10"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를 "4"로 기계직 "1"을 "3"으로 하며, "전기직1" 및 "화공직1"을 삭제하고, "보건직1" 및 "환경직1"을 신설한다.

9급정원 "6"을 "13"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행정직 "2"를 "4"로, 기계직 "1"을 "2"로, 전기직 "1"을 "2"로, 토목직 "1"을 "3"으로 하며, 환경직 "1"을 신설한다.

기능직정원 "67"을 "63"으로하고 정원내용중 "6등급:기계장2"을 신설하며, 7등급기계장 "24"를 "12"로, 8등급기계원 "29"를 "10"으로 하고, "9등급:기계원7"을 신설한다.

10등급 운전원 "1"을 "6"으로, 전기원 "2"를 "3"으로하고 "토목원3", "기계원4" 및 "위생원5"를 신설하며 합계정원 "88"을 "9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 장 고 건 11

● 서울특별시조례제2583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진학 저소득청소년들에 대한 기술양성으로 자립을 도모시키기위하여 서울특별시상 소속하여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훈련원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자체 직업훈련사업
2. 시립직업훈련기관의 훈련제회 총괄

제3조(원장) ①훈련원에 원장1인을 두고, 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훈련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하부조직) ①원장을 보좌하여 정신교육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정신교육관을 두고, 정신교육관은 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원장밑에 총무과, 교무과 및 지도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5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 또는 전문직지방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총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관인, 보안 및 인사

<p>2.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3. 시설유지 관리 4. 급식 및 직원 후생복지 5. 기타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④교무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시립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계획 총괄 2. 자체 교육계획수립 및 시행 3. 훈련생 성적관리 및 개발지도 4. 훈련장비 유지관리 5. 실습재료, 기자재 공급 및 유지관리 6. 기능점쟁 응시지도</p>	<p>7. 기타 교무행정에 관한 사항</p> <p>⑤지도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기숙사 운영 2. 상담 및 생활지도 3. 취업처개발, 알선, 사후관리 4. 체육, 교향, 여가선용 지도 5. 청소년 문화극장 운영 및 부대사업</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별표) <u>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u></p>		
<p>직 급</p>	<p>정 원</p>	<p>정 원 내 용</p>
<p>4 급</p>	<p>1</p>	<p>행정 또는 별정직</p>
<p>5 급</p>	<p>3</p>	<p>행정직1, 행정 또는 별정직1, 행정, 별정 또는 전문직1</p>
<p>6 급</p>	<p>8</p>	<p>행정직4, 행정 또는 별정직3, 건축 또는 기계직1</p>
<p>7 급</p>	<p>3</p>	<p>별정직2, 간호직1</p>
<p>8 급</p>	<p>3</p>	<p>행정직3</p>
<p>별정직</p>	<p>31</p>	<p>6급상당 10: 교육훈련교사 10 7급상당 20: 교육훈련교사3, 지도교사4, 영양사1, 영목기사1 8급상당 1: 지도교사1</p>
<p>기능직</p>	<p>25</p>	<p>7등급 2: 기계장1, 전기장1 8등급 1: 기계원1 10등급22: 기계원2, 전기원2, 교환원2, 방호원3, 운전원2, 건축원1, 사무보조원10(조두7, 타자2, 집배1)</p>
<p>합 계</p>	<p>74</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증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2.</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 고 전 ⑩</p> <p>◎서울특별시조례제2584호</p>		<p>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증정조례</p> <p>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 설치조례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지방공무원표 기능직정원 "254"를 "279"로하고 정원내용중 10등급 "포목원 25"를 신설하고 합계정원 "321"를 "346"으로 한다.</p>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소방  
시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85호

서울특별시소방시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소방서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지방공무원 정원표, 소방직정원  
"2925"를 "2985"로하고, 정원내용중 소방위  
"96"을 "98"로, 소방장 "289"를 "291"로, 소  
방교 "666"을 "682"로, 소방사 "1758"을  
"1798"로 하며,  
고용직정원 "73"을 "75"로하고 정원내용중  
사한 "73"을 "75"로 하며,  
합계정원 "3081"을 "314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항공  
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86호

서울특별시항공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항공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내 용
항공대장	1	지방소방령 또는 전문직 (수석조종사)
소 방 직	10	소방위1, 소년사9
기 능 직	2	사무보조원2(조무2)
합 계	13	

**규 칙**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무분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2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  
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과) ① 운영과에 서무계·경리계·  
운영1계 및 운영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  
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운영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서무계

<p>가. 문서, 관리관수, 보안, 인사, 복무, 직 원후생</p> <p>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예산</p> <p>다. 장비, 비품관리 및 불용품 관리</p> <p>라. 재산관리 및 부속시설(식당, 검표, 매 점)의 운영관리</p> <p>마. 의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바. 광고를 허가</p> <p>사. 청원경찰 관리</p> <p>이. 소내 업무 조정 총괄</p> <p>자. 타과,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경리계</p> <p>가. 회계 및 물품관리</p> <p>나.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p> <p>다. 세입금 및 각종 사용료 수납 총괄</p> <p>3. 운영1계</p> <p>가. 운동장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운동장 운영총괄</p> <p>나. 동대문운동장 운영총괄 및 소관 운동장사용허가, 관할권의 검인, 검표</p> <p>다. 율령피주경기장, 잠실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사용허가, 매표, 수표)</p> <p>4. 운영2계</p> <p>가. 목동운동장 운영총괄 및 소관운동장 사용허가, 관할권의 검인, 검표</p> <p>나. 잠실야구장, 잠실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사용허가, 매표, 수표)</p> <p>다. 2개운동장 이상 동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p> <p>제3조(영선과) ①영선과에 건축계, 전기계, 기계계 및 조경계를 두고 건축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전기계장은 지방전기기사로, 기계계장은 지방기계기사로, 조경계장은 지방임업기사로 보한다.</p> <p>②영선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p> <p>1. 건축계</p> <p>가.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 시설택획 수립 및 유지관리</p> <p>나. 건축물 및 토목구조물의 보수시공 감독</p> <p>다. 기타 파내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전기계</p>	<p>가. 전기, 통신, 방송, 전산 및 기타 부대 시설 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p> <p>나. 전기, 통신, 방송, 전산 및 기타 부대 시설의 보수시공 감독</p> <p>3. 기계계</p> <p>가. 기계 및 기타 부대시설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p> <p>나. 수도, 위생, 냉난방, 시설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p> <p>다. 소관공사의 보수 시공 감독</p> <p>4. 조경계</p> <p>가. 조경, 수목 및 잔디시설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p> <p>나. 조경, 수목 및 잔디시설의 설계, 시공, 감독</p> <p>제4조(동대문운동장 운영관) ①동대문운영관에 관리계 및 시설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기계기사, 지방전기기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p> <p>②동대문운영관의 제별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고 같다.</p> <p>1. 관리계</p> <p>가. 문서, 보안, 복무</p> <p>나. 재산관리 및 부속시설의 운영관리(식당, 검표, 매점)</p> <p>다. 회계 및 물품관리(소도품 포함)</p> <p>라. 임강권의 매표</p> <p>마. 운동장 사용허가에 따른 업무(동대문, 장충, 효창)</p> <p>바. 세입금 및 각종 사용료의 수납 및 정산</p> <p>사.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p> <p>자. 기타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시설계</p> <p>가. 운동장의 건축물, 토목구조물 보수 및 유지관리</p> <p>나. 전기, 통신, 방송, 전산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p> <p>다. 기계, 위생설비, 냉난방, 소화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p> <p>라. 조경시공 및 잔디, 수목초화류의 유지관리</p>
---	---

- 마. 경기용 기구관리
- 바. 기타 각종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 3. 경기장
  - 가. 각 운동장에 관리장 1인을 둔다. 다만 동대문운동장의 관리장은 관리계장이 겸임한다.
  - 나. 관리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 다. 관리장은 운영권의 명을 받아 당해 시설물의 관리와 운동장내에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독동운동장 운영권) ①독동운영관에 관리계 및 시설계 둘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기계기사·지방전기기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②독동운영관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계
  - 가. 문서, 보안, 복무
  - 나. 재산관리 및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식당, 점포, 매점)
  - 다. 회계 및 물품관리(소모품 포함)
  - 라. 입장권의 배포
  - 마. 운동장 사용허가에 따른 업무
  - 바. 세입금 및 각종 사용료의 수납 및 정산
  - 사. 금전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 아. 기타 타계의 주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시설계
  - 가. 각 운동장 건축물, 토목구조물 보수 및 유지관리
  - 나. 전기, 통신, 방송, 전산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
  - 다. 기계, 위생설비, 냉난방, 소화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
  - 라. 조정시공 및 잔디, 수목, 초화류의 유

지관리  
 마. 경기용 기구관리  
 바. 기타 각종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 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325호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 폐지  
 서울특별시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무분장규칙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 시장 고 건 ㉞

◎서울시규칙제2326호  
 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무분장규칙폐지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사무분장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 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규칙제2327호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훈련원(이하 "훈련원"이라한다)의 하루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무과) ①총무과에 서무계·경리계 및 시설관리계를 두고, 서무계장·경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 계장은 지방건축기사 또는 지\* 기계기사로 한다.

②총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문서, 편인, 보안, 예산
  - 나. 인사, 복무, 급여, 후생
  - 다. 급식관리
  - 라. 다른과 및 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경리계
  - 가. 물품구매, 계약, 지출
  - 나. 보험, 연금, 저축에 관한 사항
  - 다. 물품관리

3. 시설관리계
  - 가. 건물, 전기, 기계, 소방, 상하수도등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교무과) ①교무과에 기획계, 교무계 및 장비계를 두고, 기획계장 및 교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필경직 지방공무원으로, 장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교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계
  - 가. 시립직업훈련기관 훈련계획 총괄
  - 나. 훈련직종 취업정보 개발
  - 다. 직업훈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라.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교무계
  - 가.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훈련생 성취관리
- 다. 교육훈련 감독
- 라. 기능검정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교무 행정에 관한 사항

3. 장비계
  - 가. 훈련장비, 기자재, 실습재료의 공급 및 유지관리
  - 나. 장비개발 및 보급

제4조(지도과) ①지도과에 지도계 및 운영계를 두고, 지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필경직 지방공무원으로, 운영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지도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도계
  - 가. 기숙사 운영
  - 나. 상담 및 생활지도
  - 다. 교양, 체육, 여가선용지도
  - 라. 취업처, 개발, 알선 사무관리
  - 마.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

2. 운영계
  - 가. 청소년 문화극장 운영
  - 나. 근로청소년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제5조(직무대행) 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장 고건 ⑧

◎서울특별시규칙제2326호  
서울특별시소방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소방관파출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종로소방서	세 종 로 소 방 관 파 출 소	종 로 구 소 송 동 146-2	종로구중 : 중학동, 수송동, 견지동, 관훈동, 청진동, 공평동, 종로1가, 서린동 중구중 : 북창동, 소공동, 대평로2가, 남대문로1, 2, 3, 4, 5가, 서소문동, 장동, 신화동, 외주로1.2가, 증립동, 안덕동1.2가, 봉래동1.2가, 회현동1.2.3가, 남창동, 무교동, 다동 대평로1가, 율지로1.2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명동1.2가, 저동1가, 남산동1.2.3가, 충정로1가
	신교소방관 파 출 소	종 로 구 신 교 동 70-2	종로구중 :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청운동, 신교동, 효자동, 궁정동, 창성동, 용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무악동, 세부동, 필운동, 내자동, 사격동, 봉의동, 격선동, 표남동, 평동, 송원동, 홍파동, 교북동, 명촌동, 도림동, 당주동, 내수동, 신문로1.2가, 세종로동
	종로소방관 파 출 소	종 로 구 묘 동 59-5	종로구중 : 팔판동, 삼청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 가회동, 운니동, 경운동, 의선동, 낙원동, 인사동, 종로2가, 관철동, 훈정동, 봉의동, 묘동, 돈의동, 종로3가, 관수동, 장사동, 와룡동, 계동, 1동, 원서동, 권농동
	서 대 문 소 방 관 파 출 소	서 대 문 구 미 근 동 165	서대문구 중 : 현저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충정로2.3가, 합동, 미근동, 북아현동
	연건소방관 파 출 소	종 로 구 연 건 동 34-1	종로구중 : 해파동, 명륜동1.2.3.4가, 연건동, 동승동, 원남동, 인의동, 예지동, 연저동, 효계동, 종로4가, 종로5가중 85, 87, 88, 89, 90, 91, 92, 93, 72, 94, 95, 96, 97, 98, 100, 102, 103, 104, 110,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38, 395, 398번지
중무소방서	무 학 소 방 관 파 출 소	중 구 무 학 동 43-7	종로구중 : 창신동, 승인동 중구중 : 광학동, 흥인동, 무학동, 신당동, 장충동 1.2가
	율 지 로 소 방 관 파 출 소	중 구 율 지 로 7 가	중구중 : 주교동, 방산동, 율지로5.6.7가, 오정동, 예관동, 충무로5가, 광희동1.2가, 쌍림동, 목정동 종로구중 : 아파동, 충신동, 종로6가, 종로5가(종로5가 중 85, 87, 88, 89, 90, 91, 92, 93, 72, 94, 95, 96, 97, 98, 100, 102, 103, 104, 110,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38, 395, 398번지제외)

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용두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용두동 112-4	동대문구중: 신철동, 용두동(용두2동), 제기동(제기2동)
	중구로 소방관 파출소	중구 중부로 3가40-6	중구중: 임정동, 산림동, 을지로3가, 저동2가, 초동, 인현동 1.2가, 황무로3.4가, 팔동1.2.3가 남막동, 주자동, 여장동
성동소방서	구의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구의동 253-23	성동구중: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모진동
	성수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송정동 81-8	성동구중: 성수동1.2가, 파양동, 송정동
	능동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능동 316-3	성동구중: 능동, 군자동, 중화동
	행당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도선동35	성동구중: 화왕실리동, 상왕실리동, 마장동, 홍익동, 도선동, 행당동, 사근동, 용담동
	금호소방관 파출소	성동구 금호동1 가179-3	성동구중: 용봉동, 옥수동, 금호동1.2.3.4가
	용산소방서	한강로 소방관 파출소	용산구 한강로 2-89
이태원 소방관 파출소		용산구 이태원동 126-13	용산구중: 이태원동, 한남동, 보광동, 동빙고동, 주성동
후암소방관 파출소		용산구 후암동 244-54	용산구중: 동자동, 후암동, 용산동1.2가
이촌 소방관 파출소		용산구 이촌동 212-3	용산구중: 도원동, 송문동, 청암동, 산정동, 신창동, 원효로3.4가, 한강로3가, 이촌동
동대문 소방서	장안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장안동 434	동대문구중: 장안동, 답십리동, 회경동(회경2동), 전농동(전농1,3,4동)
	청량리 소방관 파출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2-4	동대문구중: 청량리동, 희기동, 회경동(회경1동), 이문동, 제기동(제기1동), 용두동(용두1동) 전농동(전농2동)
	중화소방관 파출소	중랑구 중화동 303-7	중랑구중: 상봉동, 중화동, 옥동
	면목소방관 파출소	중랑구 면목동 727	중랑구중: 면목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합 구 역
	망우소방관 파 출 소 중 랑 구 망 우 동 364-20	중앙구중: 망우동, 신내동
영 등 포 소 방 시	영 등 포 소 방 관 파 출 소 영 등 포 구 영 등 포 4 가 100	영등포구중: 영등포동(영등포1.2.3동), 도림동, 문래동 (문래1.2동), 신길동(신길1.2.3.4.7동)
	당산소방관 파 출 소 영 등 포 구 당 산 동 6 가 3 3 9	영등포구중: 당산동(당산1.2동), 양평동(양평1.2동)
	여 의 도 소 방 관 파 출 소 영 등 포 구 여 의 도 동 4 8 - 2	영등포구중: 여의도동
	구로소방관 파 출 소 구 로 구 구 로 동 409-60	구로구중: 신도림동, 구로동(구로3동1123-1호부터 1133-9호, 170-3호부터 766-4호 제외)
	대림소방관 파 출 소 영 등 포 구 대 림 동 906-133	영등포구중: 대림동, 신길동(신길5, 6동)
	공단소방관 출 장 소 구 로 구 구 로 동 188	구로구중: 가리봉동, 구로동(구로3동 70-3호부터 766-4호, 1123-1호부터 1133-9호)
	독산소방관 파 출 소 구 로 구 독 산 동 1030	구로구중: 독산동
	시흥소방관 파 출 소 구 로 구 시 흥 동 909	구로구중: 시흥동
성북소방서	중앙소방관 파 출 소 성 북 구 중 앙 1 동 3-72	성북구중: 중앙동, 상월곡동, 핵발전동, 안암동, 돈암동(돈암1동)
	돈암소방관 파 출 소 성 북 구 삼 선 동 4 가 349-1	성북구중: 돈암동(돈암2동), 삼선동(삼선1.2동), 성북동, 보문동, 동선동(동선1.2동), 동소문동
	정릉소방관 파 출 소 성 북 구 길 음 동 1078-2	성북구중: 정릉동, 길음동

서	별 명	정 위 지	관 합 구 역
	미야소방관 파 출 소	도 봉 구 미 아 8 동 327-2	도봉구중 : 미아동, 수유동(수유1동)
	장위소방관 파 출 소	성 북 구 장 위 동 34	성북구중 : 장위동, 석관동 도봉구중 : 번동(번 2동)
도봉소방서	방학소방관 파 출 소	도 봉 구 방 학 동 708-1	노원구중 : 창동, 월계동 도봉구중 : 방학동(방학1동중 705-725, 729번지)
	창동소방관 파 출 소	도 봉 구 방 학 동 653-4	도봉구중 : 도봉동, 쌍문동(쌍문2동) 도봉구중 : 방학동(방학 2, 3동) 방학동(방학1동 705-725, 729번지 제외)
	상계소방관 파 출 소	노 원 구 상 계 2 동 180-3	노원구중 : 상계동, 중계동
	우이소방관 파 출 소	도 봉 구 수 유 2 동 605-547	도봉구중 : 수유동(수유 2,3,4,5동), 번동(번1동) 쌍문동(쌍문1, 3동)
	공릉소방관 파 출 소	노 원 구 공 능 1 동 656-4	노원구중 : 공릉동, 하계동
	불광소방관 파 출 소	은 평 구 녹 변 동 48-5	서대문구중 : 홍은동, 홍제동 은평구중 : 불광동(불광1동), 녹원동, 응암동, 역촌동 구산동, 대조동
서구소방서	연희소방관 파 출 소	서 대 문 구 연 희 동 81-10	서대문구중 : 봉원동, 신촌동, 대신동, 내현동, 창천동, 연희동
	북 가 좌 소 방 관 파 출 소	서 대 문 구 북 가 좌 동 333-9	서대문구중 : 북가좌동, 남가좌동 은평구중 : 신사동, 중산동, 수석동
	갈현소방관 파 출 소	은 평 구 갈 현 동 3-4	은평구중 :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갈현동, 불광동(불광 2,3동)
	마포소방서	신수소방관 파 출 소	마 포 구 신 수 동 100
도화소방관 파 출 소		마 포 구 도 화 동 180-6	마포구중 :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마포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교소방관 파 출 소 서 교 동 394-12	마포구중 : 동교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 당인동 망원동(망원 1동)
성산소방관 파 출 소 성 산 동 445	마포구중 : 망원동(망원 2동), 성산동, 증동, 상암동
강남소방서 심성소방관 파 출 소 강 남 구 삼 성 동 171-3	강남구중 : 삼성동, 대치동, 일원동, 개포동, 자곡동, 수서동, 율연동, 서곡동
영동소방관 파 출 소 강 남 구 논 현 동 92-1	강남구중 :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 (145-152, 154-156, 159, 896-899, 915-932, 956-970, 972-975, 1007-1013번지) 학동(900-914, 933-936, 938, 940-945, 950-955, 977-985, 988-991, 993-1007번지) 서초구중 : 잠원동
서초소방관 파 출 소 서 초 구 서 초 동 478-1	서초구중 : 서초동, 반포동(반포 1,3,4동 (4동중 29-1, 58, 60-4))
역삼소방관 파 출 소 강 남 구 역 삼 동 771-2	강남구중 : 역삼동, 논현동(95-99, 101-112, 114-136, 138-144, 484-498, 1015-1016, 1039-1056, 1058-1059번지) 학동(499-519, 1017-1025, 1027-1029, 1031-1038, 1060-1087, 1089-1091번지) 강남구중 : 도곡동
양재소방관 파 출 소 서 초 구 개 포 구 회 정 리 지 구 225-1	서초구중 :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 강남구중 : 포이동
남부소방서 반포소방관 파 출 소 서 초 구 반 포 동 190-2	서초구중 : 방배동(방배본 1동) 반포동(반포본 2,4동(4동중 65-612번지)) 동작구중 : 동작동

서	별 명	정 위	회	관	할 구	역
	노 방 전 소 방 관 파 출 소	동 작 구 노 방 전 1동	153-18	동작구중 :	목척동, 노방전동, 본동, 상도동(상도1동)	
	사당소방관 파 출 소	서 초 구 방 배 동	733-1	동작구중 :	사당동 서초구중 : 방배동(방배 2,3동) 관악구중 : 남현동	
	신림소방관 파 출 소	관 약 구 신 립 5동	1444-21	관악구중 :	신림동(신림본 1,4,5,6동) 봉천동(봉천 본, 1동)	
	봉천소방관 파 출 소	관 약 구 봉 천 4 동	38-1	관악구중 :	봉천동(봉천 2,3,4,5,6,7,8,9,10동) 신림동(신림 2,9동)	
	상도소방관 파 출 소	동 작 구 상 도 동	324-21	동작구중 :	상도동(상도 2,3,4동), 대방동, 신대방동	
	난곡소방관 파 출 소	관 약 구 신 립 11동	757-11	관악구중 :	신림동(신림 3, 7, 8, 10, 11동)	
강서소방서	등촌소방관 파 출 소	강 서 구 등 촌 동	630-2	강서구중 :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마곡동, 방화동, 개화동	
	화곡소방관 파 출 소	강 서 구 화 곡 동	61-8	강서구중 :	화곡동 양천구중 : 신월동(신월 1,3,5동)	
	공암소방관 파 출 소	강 서 구 내 발 산 동	667-1	강서구중 :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암동, 파해동, 오곡동, 오쇠동	
	오류소방관 파 출 소	구 로 구 궁 동	213-20	구로구중 :	궁동, 오류동, 은수동, 천왕동, 함동, 개봉동(개봉3동)	
	신정소방관 파 출 소	양 천 구 신 정 동	1191-4	양천구중 :	신정동(신정 3,4,5동), 신월동(신월 2,4,6동)	
	목동소방관 출 장 소	양 천 구 목 5동	901	양천구중 :	목동, 신정동(신정 1,2,6동)	
	교척소방관 파 출 소	구 로 구 교 척 2동	165-5	구로구중 :	교척동, 개봉동(개봉1,2동)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강동소방서	성내소방관 파 출 소	강 동 구 성 내 동 541-39	강동구중: 성내동, 둔촌동(둔촌2·3동), 성내동(성내 1동중 99-3, 108-1, 321, 320-13, 15, 7, 9, 319-33, 327, 328번지 제외), 천호동(천호3동)
	잠실소방관 파 출 소	송 파 구 잠 실 동 44-5	송파구중: 잠실동(잠실3동), 석촌동, 송파동, 가락동 강동구중: 삼전동
	천호소방관 파 출 소	강 동 구 성 내 동 502-13	강동구중: 풍납동, 천호동(천호1·2·4동), 암사동, 성 내동(성내1동중 99-3, 108-1, 321, 320-13, 7, 9, 15, 319-33, 327, 328번지)
	거여소방관 파 출 소	송 파 구 마 천 동 307-11	송파구중: 거여동, 마천동, 문정동, 강지동
	고덕소방관 파 출 소	강 동 구 고 덕 동 494	강동구중: 상일동, 하일동, 고덕동, 명일동
	종합운동장 소 방 관 파 출 소	송 파 구 잠 실 동 10	송파구중: 잠실동(잠실본·1·2·5동), 신천동(잠실4·6동)
	방이소방관 파 출 소	강 동 구 방 이 동	강동구중: 둔촌동(둔촌1동) 송파구중: 방이동, 오금동

서울특별시외사부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329호

서울특별시외사부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외사부분장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작업계, 위생설비계 및 처  
분장관리계(마포구에한함)을 두고'를 '작  
업계 및 위생설비계를 두고'로 하고 동조  
제2항 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46호

가 축 검 진 사 업 실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서울특별시 관내에 기르고 있는 쫓소에 대  
한 검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동법시  
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0. 2. 15.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 및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에 기여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3. 내 용 : 췌소의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잠진

4. 실시기간 : '90. 3. 1 - 11. 30

5. 실시방법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원과 공수의에게 위촉 실시

6. 실시대상  
 ○ 결핵병 : 췌소1세이상 전두수  
 ○ 부루세라병 : 착유하는 젖소

7. 기타사항 : 잠진결과 양성 및 의양성 췌소가 발생 되었을때는 농림수산부 예규 제 132호에 의거 조치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82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공고**

육동개발사업 잔여업무 처리계획('89.12.12 시장방침제2431호)에 의하여 '90. 2. 1 양친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면장이 있어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인 폐기 신고하고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90. 2. 15

서울특별시장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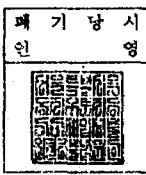
관 서 명    서울특별시

---

직    명    서울특별시육동지구토지등기비세입세출외환금출납원

1989년 12월 30일부터  
1990년 2월 15일까지

사 용 기 간



**구 고 시**

**◎성북구고시제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171호('72.1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된 석판시장주변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성북구 공고 제4호('90. 1.18)로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27조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2. 13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석판1동 270-1~석판1동 279-3간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석판시장주변 도로 포장공사
3. 사업의규모 : 폭=6-8m, 연장=100m
4.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5. 사업확수 및 준공예정일 : '90.1-'9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소재지, 지번,

- 지목, 지력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3항의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 8.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비치

●송파구고시제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1. 건설부고시제78호(72.3.6), 서울특별시고시제 196호(75.1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시고시 제196호(75.12.1), 제206호(73.12.24)로 지적고사된 거여고교 진입로의 1개소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송파구 공고 제3호(90.1.11)로 공람공고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본 사업을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송 파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1) 거여동 562의4-329외2호간 2) 풍납동 306외10-273외2호간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업의 규모 : B=6-30m, L=400m
- 라. 사업의 시행자 : 송파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성동구고시제8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제137(78.4.3)로 결정 및 같은 고시제191(81.5.25)호로 사업시행허가

되고, 성동구 고시제1호로(88.7.4)사업시행변경 허가되고, 성동구공고제61호(89.10.23)호 사업 완료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허가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전화 450-1385)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9

성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694-1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 성동국민학교 시설확충(5층 건물 교실 증축)
- 다. 사업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694-1  
성명 : 학교법인 정철학원 이사장 장 선 옥
- 라. 사업의 규모 : 부지 : 11,294.6㎡  
기존 : 6,627.82㎡  
변경 : 7,865.83㎡(지상 5층 교실증축) (증1,238.01㎡)
-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90. 6. 1 - '91. 3. 30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면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학교법인 정철학원, 기타없음
-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학교법인 정철학원, 기타 없음.

●구로구고시제15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제137호('90. 1. 5)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2.

구로구청장

- 다 음 -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의 139-63의 2번지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고척동 76번지 도로확장 공사(2차)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15m, L=62m 하수도 D=250mm, L=111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89. 11. 5 - '90.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 조서(생략)

**구 공 고**

●성동구공고제7호

도 시 계 획 안 공 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90. 2 - '90. 2 (14일간)  
나. 공람장소: 성동구청 도시경비과  
(전화 450-1325~7)

1990. 2.

성동구청장

구분	도 시 계획안	위 치	규 모	비고
신설	도 로	성동구 용봉동	B=15m 200-2일대	L=60m

●강동구공고제1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391호('77.11. 3)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된 신둔국교(위례중) 2차 진입로 개설 공사를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가. 공람장소: 강동구청 토목과

나. 공람기간: '90. 2. 8 - '90. 2. 22

1990. 2. 8

강동구청장

- 공 램 개 요 -

1. 사업명: 신둔국교(위례중) 진입로 개설 공사(2차)
2. 사업시행기간: 문촌동 150의 1-112의 8 (신둔 국민학교 신축 예정지 주변)
3. 사업시행규모: 도로개설 B=15-23m L=250m
4.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기타 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및 문의 바람.

토 지 조 서					
번호	위 치	지목	면 적 (㎡)	소 유 자	
1	둔촌동 150-2	임	116	강동구 암사동 268-13	김의구
2	" 150-11	임	1,678	은평구 용암동 585-15	윤정완
3				강남구 대치동 1014-8 현대 가든빌라 다동 302호 노원구 공릉동 338-68	김소악 권동혁
4	" 151-7	대	107	송구 주자동 49-5	손추석
5	" 151-2	건	293	강동구 암사동 268-13	김의구
6	" 33-5	답	1,224	강동구 길동 408-14	박수영
7	" 132-4	답	268	강동구 길동 408-4	"
8	" 112-8	답	269	"	"
9	" 112-5	대	42	강동구 둔촌동 109	조석희

**◎송파구공고제1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 승인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져 도시 계획법 제2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2 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 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 고로 갈음합니다.

1990. 2.  
송 파 구 청 장

사 업 시 행 지	사업종류및 사업명칭	규 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자	지적고시 일 자
풍납동 269-9 ~ 269-16간	도시계획사 업(도로)	B= 6m L=30m	인가일로부터 2년간	서고시 제226호 ('88. 3. 28)	서고시제 264호 ('88. 4.13)
거여동 58-1 ~산 23-27호간	"	B=10m L=330m	"	송파구고시제 6호 ('89. 5.22)	송파구고시 시제6호 ('89. 5.22)

나. 사업의 시행자 : 송파구청장  
 다.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목과 (전화 410-340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b>●종로구공고제15호</b></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 제432호 ('83. 7. 1)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시 고시 제536호 ('89. 12. 19) 및 종로구 고시 제80호 ('89. 12. 28)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p> <p>나. 사업개요</p>		<p>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기간내 종로구청 토목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1990. 2. 12</p> <p>종로구청장</p> <p>- 공 램 요 지 -</p> <p>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p>			
사업시행지	사업의 명칭	규모	착공일	준공예정일	
가희동 산1-4 명륜동3가 61-1	감사원 - 1세대간 도로개설공사	B=6-8m L=670m	인가일로부터 10일 이내	1991. 12. 31.	
<p>다.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p> <p>라. 수용할 토지(건물)조서 및 계획도면: 생략</p> <p>마. 공람장소: 종로구청 토목과</p> <p>바. 공람공고기간: 풍고일로부터 14일간</p> <p>사. 기타 상세한것은 종로구청토목과 (734-3152)문의</p>		<p>제14조2 규정에 의거 구로구 도시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관련 도서를 보입니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정비과</p> <p>나. 공람기간: 1990. 2. 15 - 1990. 3. 2</p> <p>다. 관련도서: 공람장소 비치 내용과 상유</p> <p>1990. 2. 15</p> <p>구로구청장</p>			
<p><b>●구로구공고제17호</b></p> <p>도시 계획 안 공 램 공 고</p> <p>1. 도시계획법 제16조 2 및 같은법 시행령</p> <p>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안</p> <p>단위:㎡</p>					
구분	위 치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종치지구 변 경	계	3,193,500	2,733,000	감460,500	
	은수동 65일대	2,330,000	1,993,000	감337,000	
	궁 동 189일대				
	시흥동 937일대	863,000	760,000	감123,500	
최고고도 지구선설	계	460,000			종치지구 해제 부분을 최고고 도 지구 (5층 18m이하) 결정
	은수동 65일대	337,000			
	궁 동 189일대	123,000			
	시흥동 937일대	123,000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4	송 화 숙	공 보 관		지방사무보조원(조무) (10등급)	공 보 관	지방사무보조원시보(조무) (10등급)	
5	이 주 희	"		"	"	"	"
6	허 평 희	"		지방기재원(영사)	"	지방기재원시보(영사)	
7	차 금 옥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시보(조무)	
8	박 선 미	"		"	"	"	"
9	이 계 차	기획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	기획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시보(타자)	
10	장 현 숙	예산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예산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조무)	
11	김 은 희	투자관리 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	투자관리 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2	조 정 자	"		"	"	"	"
13	민 은 주	치 수 과		"	치 수 과	"	"
14	홍 장 표	시정개발 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시정개발 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5	김 용 대	"		"	"	"	"
16	정 미 숙	전산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전산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17	신 정 옥	법무담당관		"	법무담당관	"	"
18	이 경 연	통계담당관		"	통계담당관	"	"
19	윤 미 자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20	이 성 옥	기술심사 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	기술심사 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21	배 임 순	관 방 과		"	관 방 과	"	"
22	노 경 문	문 화 과		"	문 화 과	"	"
23	손 선 옥	감 사 1 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조무)	감 사 1 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24	홍 옥 희	"		지방사무보조원(타자)	"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25	정 광 자	조 답 사 담당관		"	조 답 사 담당관	"	"
26	양 남 순	청 소 1 과		"	청 소 1 과	"	"
27	송 미 석	총 무 과		지방교원원	총 무 과	지방교원원시보	

인피 번호	성 명	계 정			현 격		
		부 서	직 위 (조 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28	봉 인 호	총 무 과	지방사무보조원(조부) (10등급)		총 무 과	지방사무보조원(조부)서보 (10등급)	
29	강 철	"		"	"		"
30	조 양 수	"		"	"		"
31	신 종 현	"		"	"		"
32	김 동 수	"		"	"		"
33	김 언	"		"	"		"
34	박 한 기	"		"	"		"
35	이 영 자	"		"	"		"
36	한 영 환	"		"	"		"
37	진 경 숙	"		"	"		"
38	임 광 익	"		"	"		"
39	신 언 선	"		"	"		"
40	봉 영 락	"		"	"		"
41	권 화 복	"		"	"		"
42	최 명 수	"		"	"		"
43	박 계 호	"		"	"		"
44	유 계 길	"		"	"		"
45	심 길 자	"		"	"		"
46	임 복 순	"		"	"		"
47	신 영 희	"		"	"		"
48	권 영 수	"		"	"		"
49	김 현 식	"		"	"		"
50	김 순 천	"		"	"		"
51	이 이 진	"		"	"		"

인비 번호	성명	직명			현직		
		부서	직급	직급	부서	직급	직급
52	김보현	총무과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총무과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0등급)		
53	이희태	"	"	"	"	"	
54	강귀분	"	"	"	"	"	
55	김규문	"	"	"	"	"	
56	김연화	"	"	"	"	"	
57	정미숙	"	지방교원원	"	지방교원원시보		
58	이상예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59	이상	"	"	"	"	"	
60	서차량	"	"	"	"	"	
61	한만예	"	"	"	"	"	
62	이춘용	"	"	"	"	"	
63	안산준	"	"	"	"	"	
64	송민현	"	"	"	"	"	
65	최종운	"	지방통신원	"	지방통신원시보		
66	김남윤	"	지방방호원(방호)	"	지방방호원(방호)시보		
67	백탕순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68	장순영	"	"	"	"	"	
69	이용해	"	"	"	"	"	
70	송인숙	"	"	"	"	"	
71	김창원	"	지방방호원(방호)	"	지방방호원(방호)시보		
72	김영소	"	"	"	"	"	
73	김운학	"	지방건축원	"	지방건축원(목공)시보		
74	김동인	"	지방방호원(방호) (10등급)	"	지방방호원(방호)시보 (10등급)		
75	우청진	"	"	"	"	"	

인비 번호	성명	계정			현직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76	조구돌	총무과		지방방호원(방호) (10등급)	총무과	지방방호원(방호)시보 (10등급)	
77	이원봉	"		"	"	"	"
78	박주만	"		"	"	"	"
79	이강현	"		"	"	"	"
80	한은호	"		"	"	"	"
81	최성훈	"		"	"	"	"
82	오세덕	"		"	"	"	"
83	강한용	"		"	"	"	"
84	신동수	"		"	"	"	"
85	이엽두	"		"	"	"	"
86	이근영	"		"	"	"	"
87	양계혁	"		지방전기원	"	지방전기원시보	
88	이원	"		지방건축원	"	지방건축원(목공)시보	
89	박상주	"		지방전기원	"	지방전기원시보	
90	김영근	"		지방기계원	"	지방기계원시보	
91	임종대	"		지방전기원	"	지방전기원시보	
92	장기성	"		"	"	"	"
93	이성춘	"		"	"	"	"
94	박승복	"		"	"	"	"
95	진성락	"		"	"	"	"
96	김수만	"		"	"	"	"
97	이동규	"		지방기계원	"	지방기계원시보	
98	주상출	"		"	"	"	"
99	이광래	"		"	"	"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원 계		
		부 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시	직 위	직 급
100	이 광 세	총 무 과		지방기계원 (10등급)	총 무 과		지방기계원시보 (10등급)
101	이 세 자	"		"	"		"
102	황 명 삼	"		"	"		"
103	김 환 승	"		"	"		"
104	김 성 수	"		"	"		"
105	최 광 진	"		지방통신원	"		지방통신원시보
106	명 용 재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07	우 미 숙	"		지방교원원	"		지방교원원시보
108	유 경 산	"		지방사무보조원	"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09	방 기 욱	"		지방방호원(방호)	"		지방방호원(방호)시보
110	이 은 파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11	이 희 경	"		지방사무보조원(타자)	"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112	김 규 임	"		"	"		"
113	황 성 숙	"		"	"		"
114	김 형 숙	"		"	"		"
115	박 찬 용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16	임 경 희	"		"	"		"
117	윤 경 방	"		"	"		"
118	김 영 애	"		"	"		"
119	전 은 규	"		"	"		"
120	이 소 정	"		"	"		"
121	이 춘 성	"		"	"		"
122	박 명 희	"		지방사무보조원(타자)	"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123	이 동 권	시 민 과		지방사무보조원(집배)	"		지방사무보조원(집배)시보

인비 번호	성 명	제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24	오 태 숙	시 민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시 민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시보
125	오 보 규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시보
126	이 해 선	청 소 2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청 소 2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시보
127	김 태 실	인 사 과	"		인 사 과	"	"
128	김 은 선	행 정 과	"		행 정 과	"	"
129	도 상 문	관 재 과	지방방호원(경비)		관 재 과	지방방호원(경비)	시보
130	이 갑 중	"	"		"	"	"
131	석 건 호	"	"		"	"	"
132	이 재 황	"	지방방호원(방호)		"	지방방호원(방호)	시보
133	한 미 희	"	지방사무보조원(타자)		"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시보
134	박 회 숙	세 지 무 지 도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세 지 무 지 도 과	"	"
135	한 상 철	보 위 생 위 생 과	지방기계원		보 위 생 위 생 과	지방기계원	시보
136	이 은 주	의 약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의 약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시보
137	윤 애 심	"	"		"	"	"
138	정 해 련	보 연 연 금 과	"		보 연 연 금 과	"	"
139	전 용 화	양 정 과	사무보조원(조무)		양 정 과	사무보조원(조무)	시보
140	이 복 순	"	"		"	"	"
141	서 연 옥	"	사무보조원(타자)		"	사무보조원(타자)	시보
142	이 수 의	"	사무보조원(조무)		"	사무보조원(조무)	시보
143	조 영 옥	"	"		"	"	"
144	김 경 희	"	"		"	"	"
145	홍 대 식	"	방호원(방호)		"	방호원(방호)	시보
146	김 성 채	"	방호원(경비)		"	방호원(경비)	시보
147	문 명 희	감 사 2 담 당 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		감 사 2 담 당 관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시보

인비 번호	성 명	제 정			현 직		
		부 서 (호 불)	직 위	급	부 서	직 위	급
148	탁 미 애	하 수 행 정 과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10 등 급)	하 수 행 정 과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시 보
149	김 도 희	상 공 과		"	상 공 과		"
150	김 새 현	주 차 계 획 담 당 과		"	주 차 계 획 담 당 과		"
151	박 은 희	소 비 자 소 보 호 과		"	소 비 자 소 보 호 과		"
152	조 해 령	하 수 행 정 과		"	하 수 행 정 과		"
153	여 미 행	국 교 류 과		"	국 교 류 과		"
154	최 재 우	양 정 과	방 호 원 (경 비)	"	양 정 과	방 호 원 (경 비)	시 보
155	조 구 철	"	"	"	"	"	"
156	강 명 훈	"	"	"	"	"	"
157	김 형 섭	소 비 자 소 보 호 과	지 방 방 호 원 (경 비)	"	소 비 자 소 보 호 과	지 방 방 호 원 (경 비)	시 보
158	김 욱 희	조 경 과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	조 경 과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시 보
159	이 미 희	연 료 과		"	연 료 과		"
160	김 명 애	농 축 과		"	농 축 과		"
161	김 덕 입	"	지 방 사 무 보 조 원 (조 무)	"	"	지 방 사 무 보 조 원 (조 무)	시 보
162	김 윤 정	가 북 지 과		"	가 북 지 과		"
163	나 경 현	"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	"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시 보
164	박 정 임	도 제 시 회 과	지 방 사 무 보 조 원 (조 무)	"	도 제 시 회 과	지 방 사 무 보 조 원 (조 무)	시 보
165	지 영 분	"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	"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시 보
166	조 효 숙	시 계 설 과		"	시 계 설 과		"
167	이 영 재	지 려 과		"	지 려 과		"
168	강 미 자	도 제 회 과		"	도 제 회 과		"
169	김 대 환	도 시 설 과	지 방 통 신 원	"	도 시 설 과	지 방 통 신 원	시 보
170	구 윤 희	"	지 방 전 기 원	"	"	지 방 전 기 원	시 보
171	박 경 란	건 축 지 도 과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	건 축 지 도 과	지 방 사 무 보 조 원 (타 자)	시 보



인비 번호	성 명	제 칭			원 직		
		부 서	직 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72	김 언 우	주 택 과 기 획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0등급)		주 택 과 기 획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173	김 재 희	주 개 랑 과			주 개 랑 과		
174	서 춘 화	공 원 과			공 원 과		
175	허 증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76	이 근 옥	녹 지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녹 지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177	최 종 근	교 통 과 기 획 과		지방기계원	교 통 과 기 획 과	지방기계원시보	
178	박 세 관			지방전기원		지방전기원시보	
179	강 위 진						
180	김 상 구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81	정 선 경						
182	최 해 자	운 수 1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운 수 1 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183	류 경 애	운 수 2 과			운 수 2 과		
184	한 영 민	하 수 처 리 과	지방사무보조원(조무)		하 수 처 리 과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85	김 은 태						
186	임 근 평	운 영 과		지방전기원	운 영 과	지방전기원시보	
187	박 용 권						
188	이 성 주						
189	임 구 옥						
190	원 용 옥			지방기계원		지방기계원시보	
191	이 선 옥		지방사무보조원(조무)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192	이 제 감						
193	천 용 철						
194	김 재 규						
195	노 흥 식						

인비 번호	성 명	제			현		
		부 서	직 위 (호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96	황 병 인	운 영 과	지방사무보조원(조부) (10등급)		운 영 과	지방사무보조원(조부)시보 (10등급)	
197	이 규 선	민방위과	지방사무보조원(특차)		민방위과	지방사무보조원(특차)시보	
198	유 현 숙	"	지방사무보조원(조부)		"	지방사무보조원(조부)시보	
199	박 재 균	비 상 계 획 과	지방청지원		비 상 계 획 과	지방청지원시보	
200	홍 제 기	"	"		"	"	
201	이 욱 순	노 정 과	지방사무보조원(특차)		노 정 과	지방사무보조원(특차)시보	
202	박 정 규	문화재과	"		문화재과	"	
203	박 순 욱	도 시 시 설 과	"		도 시 시 설 과	"	
204	이 보 형	행 정 과	"		행 정 과	"	
205	윤 회 숙	국 민 운 동 지 시 원 과	"		국 민 운 동 지 시 원 과	"	
206	경 현 명	시 생 활 과	"		시 생 활 과	"	
207	경 순 임	"	"		"	"	
208	이 은 주	심 사 분 석 담 당 관	"		심 사 분 석 담 당 관	"	
209	윤 주 형	예 담 당 담 당 관	"		예 담 당 담 당 관	"	
210	김 은 정	시 정 개 발 담 당 관	"		시 정 개 발 담 당 관	"	
211	이 금 선	"	"		"	"	
212	김 차 영	"	"		"	"	
213	박 명 숙	회 계 과	"		회 계 과	"	
214	김 정 란	"	"		"	"	
215	류 인 향	세 정 과	"		세 정 과	"	
216	김 용 회	관 재 과	지방방호원(경비)		관 재 과	지방방호원(경비)시보	
217	노 종 원	"	"		"	"	
218	권 용 심	교 기 회 과	지방사무보조원(특차)		교 기 회 과	지방사무보조원(특차)시보	
219	박 경 숙	가 스 과	"		가 스 과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220	강 희 영	계개발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10등급)		계개발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10등급)	
221	송 경 희	도개발과	.		도개발과	.	
222	김 향 화	건설과	.		건설과	.	
223	이 정 선	보위생과	.		보위생과	.	
224	신 동 배	사회과	.		사회과	.	
225	나 유 정	부지과	.		부지과	.	
226	송 은 화	교기통과수	.		교기통과수	.	
227	홍 희 선	하행정과	.		하행정과	.	
228	어 명 옥	민방위과	지방사무보조원(조무)		민방위과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229	박 진 희	운영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운영과	지방사무보조원(타자)시보	
230	이 정 옥	.	.		.	.	
231	김 경 희	비계상과	.		비계상과	.	
232	임 보 숙	상공과	.		상공과	.	
233	박 용 애	환경과	.		환경과	.	
234	정 희 주	생체활과	.		생체활과	.	
235	성 동 희	조달담당관	.		조달담당관	.	
236	안 연 숙	시립부녀소	.		시립부녀소	.	
237	유 동 훈	.	지방방호원(경비)		.	지방방호원(경비)시보	
238	김 미 자	.	.		.	.	
239	임 신 란	.	지방사무보조원(조무)		.	지방사무보조원(조무)시보	
240	박 은 희	.	.		.	.	
241	김 옥 희	.	.		.	.	
242	유 경 숙	.	.		.	.	
243	김 경 선	.	.		.	.	

인비 번호	성 명	제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직 급	
244	홍 점 순	시법부녀 보호소		지방사무보조원(조부) (10등급)	시법부녀 보호소		지방사무보조원(조부)시보 (10등급)		
245	윤 기 섭	"		지방방호원(방호)	"		지방방호원(방호)시보		
246	이 은	위생 처리장		지방사무보조원(조부)	위생 처리장		지방사무보조원(조부)시보		
247	황 인 구	"		지방기계원	"		지방기계원시보		
248	유 승 열	"		지방전기원	"		지방전기원시보		
249	류 근 태	"		지방기계원	"		지방기계원시보		
250	이 상 용	"		"	"		"		
251	안 창 광	"		"	"		"		
252	박 상 열	"		지방방호원(경비)	"		지방방호원(경비)시보		
253	서 경 복	"		지방기계원	"		지방기계원시보		
254	공 한 택	"		"	"		"		
256	고 용 회	"		"	"		"		
257	윤 봉 용	"		"	"		지방방호원(경비)시보		
258	정 재 기	근로자 회		"	근로자 회		지방기계원시보		
259	안 영 모	"		"	"		"		
260	김 중 복	"		지방방호원(방호)	"		지방방호원(방호)시보		
261	전 우 식	"		"	"		"		
262	송 성 섭	"		"	"		"		
263	이 상 열	"		지방사무보조원(조부)	"		지방사무보조원(조부)시보		
264	강 경 자	"		"	"		"		
265	김 남 순	"		"	"		"		
266	이 순 금	"		"	"		"		
266	오 영 예	"		"	"		"		

◎1990년 2월 15일자 지방별정직 8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 명세 50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손 인 영	지방별정직 8 급상당(훈련교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구로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신 규	
이 상 영	지방별정직 8 급상당(훈련교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노원부녀복지관 근무를 명함.		
◎1990년 2월 14일자 고용직 공무원 진보 명세 51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정 진 숙	감사 2 담당관	안양하수처리장	지방장무원
이 상 진	총 무 과	노 원 구	지방전기보조원
◎1990년 2월 15일자 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 명세 52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박 동 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임업기사
노 진 학	불문경고(서울시 제 1 인사 위원회 의결사항)	보라매공원관리 사업소	지방임업기과
이 강 운	"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임업기정
박 성 수	"	시립대	지방건축기과
황 희 철	"	채개발과	지방건축기사
양 상 욱	"	녹지사업소	지방임업기사
원 태 식	"	중랑건설본부	지방임업기사보
임 병 득	"	시립운동장	지방건축기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진보 명세 53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유 영 윤	동 작 구	도로계획과	지방전기기사
허 건 욱	치 수 과	동 작 구	"
문 영 홍	시립동부병원	서 초 구	지방보건(병리) 기사보
김 희 정	서 초 구	아 동 병 원	"
홍 상 기	동 작 구	강 동 구	지방토목기사보

◎1990년 2월 10일자		기능직 공무원 특별 임용			병제 19 호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직 급	호	부	서	
1	양 규 식	지방사무보조원(조무)			동부수도사업소	
2	이 복 진				강서수도사업소	
3	김 경 자	지방사무보조원(타자)			암사수원지사무소	
◎1990년 2월 6일자		기능직 공무원 면직 발령			병제 20호	
인비 번호	성 명	제 정		현 직		
		부 서	직 위	부 서	직 위	
1	홍 성 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영등포수도 사 업 소	지방기계원 (10등급)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공무국의 여행 명령 통보						
여 행 자			여 행 국	여 행 기간	여 행 경비	여 행 목적
소 속	직 명	성 명				
환경과	지방보건 기정	유익현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스투트가르트, 암스테르담	'90. 2. 25 - 3. 11 (15일간)	시립대수도권 개발연구소 (용역비) 부담	한강의 수질 및 생태계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주요하천 실태 조사
서울특별시장						

(별첨 제 2 호서식) **출 공 통 지**

인 적 사 항	성 명	김진현 (金珍顯)	성 별	남성
	본 적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20-100	출 생 연	1967. 11. 25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20-100			
출 의 이 유	심문 및 검문			
출 석 일시	1999 년 2 월 25 일 오전 10 시 30 분			
출 석 장소	시정 기획상황실			

- 유의 사항**
1. 출석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 불응을 주의 제공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출석불응을 하거나 출석한 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 불응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음.
  3. 상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당한 사유가 출석 불응 사유가 아니거나 출석불응의 또는 출석불응으로 출석 불응을 하거나 출석 불응의 경우에는 출석 불응 처우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6 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9 년 2 월 25 일

서울특별시계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1999 년 2 월 25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의 출석하여 진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9 년 2 월 25 일

성 명

서울특별시계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 2 호서서)

### 통 지 통 지 서

인 계 사	성 명	윤 종 보 (尹忠鎬)	소 속	강남구 공무원
	직 명		직 명	지방행정서기
학 부	본 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북동 88의 2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공우안아파트 801동 1208호		
유 석 이 유		심문 및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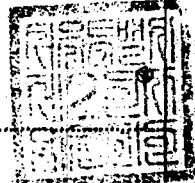
발 서 일 자 1990 년 2 월 27 일 14 시 00 분

발 서 장 소 시청 기획상황실

-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유석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 년 2 월 15 일  
 서울특별시제 2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귀하



### 진 술 권 포 기 서

인 계 사 학 부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직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상 경

서울특별시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귀하



[ 별지 제 2 호서식 ]

출 석 통 지 서

인 격 사 람	성 명	김 석 영 (金錫英)	소 속	내무국 대기
			직 명	지방화공기원
본 적	본 적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나촌리 255번지		
	주 소	서울 강서구 와곡5동 주공아파트 43동 409호		
출 석 이 유	심문 및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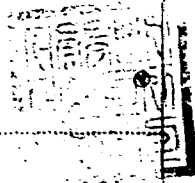
출석일시 1990 년 2 월 27 일 14 시 -- 곧

출석장소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경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 년 2 월 14 일  
서울특별시계 2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격 사 람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계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